

# 정보화조정위원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정보화 방향의 설정, 정보화 사업의 추진, 정보화 정책의 심의·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정보화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본교의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관별 중·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, 연구, 학술, 행정 분야의 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4. 캠퍼스 및 부처 간 정보화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 제 2 장 구성 및 임원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,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총무처장, 정보통신팀장으로 하며 약간 명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④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,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산하기구)**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정보화실무위원회를 둔다.

## 제 3 장 위원회

**제7조(회의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**제8조(의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보고)**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

## 제 4 장 정보화실무위원회

**제10조(기능)** 정보화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2조의 각 호에 대한 실무적인 기획, 검토, 심의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11조(구성)**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장은 정보통신팀장으로 하고, 전략기획팀장, 교무팀장, 대학교육개발센터부서장, 총괄지원팀장, 산학기획팀장, 학술정보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**제12조(실무위원장 직무)**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, 검토된 사항을 정보화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13조(회의 및 의결)** 실무위원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.

## 제 5 장 보 칙

**제14조(세부사항)**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해산 및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보화위원회는 해산하며 관련지침은 폐지한다.

#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